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2
----------	----

제안년월일 : 1998. 4. 20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의 7명

1. 주 문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나. 구성인원 : 11명(총무사회위원회5, 도시산업위원회6)

다. 위원선임 :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 거쳐 선임

라. 심사내용

○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